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7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7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평창군 지명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 해소 및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 (당초)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서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5항)

-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의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안 제4조제1항)
- 가부동수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봐야함에 따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 삭제(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에서 위원구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간사 위촉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
- 또한,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회의소집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사항 중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함.
-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류번호 :

수 신 : 도지명위원회위원장

(평 창 군)

20

발신 : 평창군지명위원회위원장

지명(제정, 변경, 기타) 보고

① 소재지	도		군	읍	면	② 조사기간	20 ~ 20		③ 도엽명				
④ 위원회조정						⑤ 상급위원회 승인			20				
⑥ 정리번호	⑦ 행정구역명 (도,군,면,리)	⑧ 현재호칭되는지명			⑨ 지명의 종 류	⑩ 현지도의 표기내용	⑪ 직각좌 표	⑫ 지명의 유 래	⑬ 제 정	⑭ 조 정	⑮ 중앙지명위원회 결 정		⑯ 비 고
		A	B	C							한글표기	로마자 표 기	
		한글											
		한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첨 부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2. 심의회의록

- 작성요령
- ⑥란은 조사지명을 식별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한 번호기입
 - ⑧란은 현재호칭되는 지명을 기재하고 복수지명이 있을 때는 사용빈도에 따라 A, B, C 순으로 기입
 - ⑨란은 산, 강, 들, 자연부락 등 세분하여 기입
 - ⑩란은 현행지도상 표기된 내용 기입
 - 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
 - ⑫란은 지명의 역사성 제정사유 등 상세히 기록
 - ⑬란은 최초 제정한 위원회명과 ⑭란은 도지명위원회에서 조정된 지명기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u>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u>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관계공무원</u></p> <p>2.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u></p> <p>3. <u>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④ (생략)</p> <p><u>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u></p> <p>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u>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p> <p>-----.</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u> <u>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u>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u></p> <p>제4조(회의 및 의사) ① -----</p> <p>-----.</p>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 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

제5조(임기) -----
----- 하되, 한 차례
만 ----.